

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 (제19조제1항 관련)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일반직 2급	일반직 3급	일반직 4급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일반직 7급	일반직 8급	일반직 9급
			연구관				연구사			
경찰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군인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교육 공무원 (사립 학교 교원 포함)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교원	교수 (3년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 · 고등학교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중 대학봉급액란 적용 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상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중 전문대학봉급액 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상		
판사·검사			8호봉 이상	5호봉 이상	2호봉 이상					
임기제공무원					연봉4호 또는 전문임기 제가급	연봉5호 또는 전문임기 제나급	연봉6호 또는 전문임기 제다급	연봉7호 또는 전문임기 제라급	연봉등급 8호	연봉9호 또는 전문임기 제마급
별정직공무원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전문경력관					“가” 군 27호봉 이상	“가” 군 26호봉 이하	“나” 군 28호봉 이상	“나” 군 27호봉 이하	“다” 군 28호봉 이상	“다” 군 27호봉 이하
관련직무분야 학위소지자			박사학위 소지 후 1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 후 10년이상	박사학위소 자후 5년 상 또는 기 술심리관규 칙 제2조제2 항의 자취 있는자	박사학위소 자 또는 기술심리관 규칙 제2조제2 항의 자 취이 있는 자	석사학위 소지자			

비고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
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다.